



노인 문제, 대책은...

대전 시설 내 노인학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

매년 6월 15일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상황 속에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이다.

대전 노인학대 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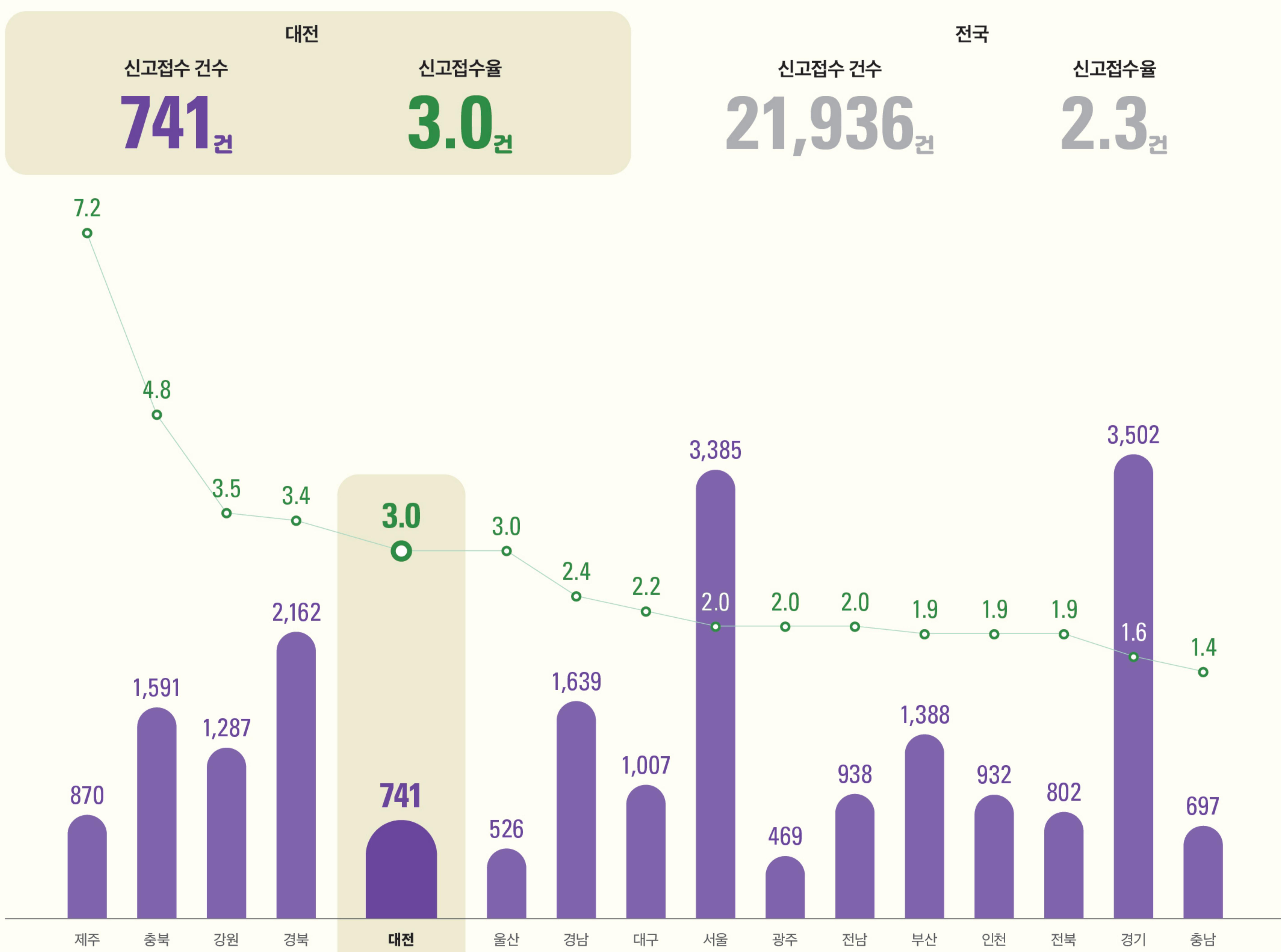
3.0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2023년 대전의 노인학대 신고접수된 건수는 741건으로 노인인구 천 명당 3.0건이다. 이는 전국 평균 2.3건보다 높은 수치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신고접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노인 천 명당 7.2건)로 나타났다. 대전은 충북(4.8건), 강원(3.5건), 경북(3.4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2023)

●: 신고접수 건수 ○: 신고접수율(노인인구 천 명당) 단위: 건



· 65세 이상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23. 12. 기준

· 신고접수율=신고접수 건수/65세 이상 인구수×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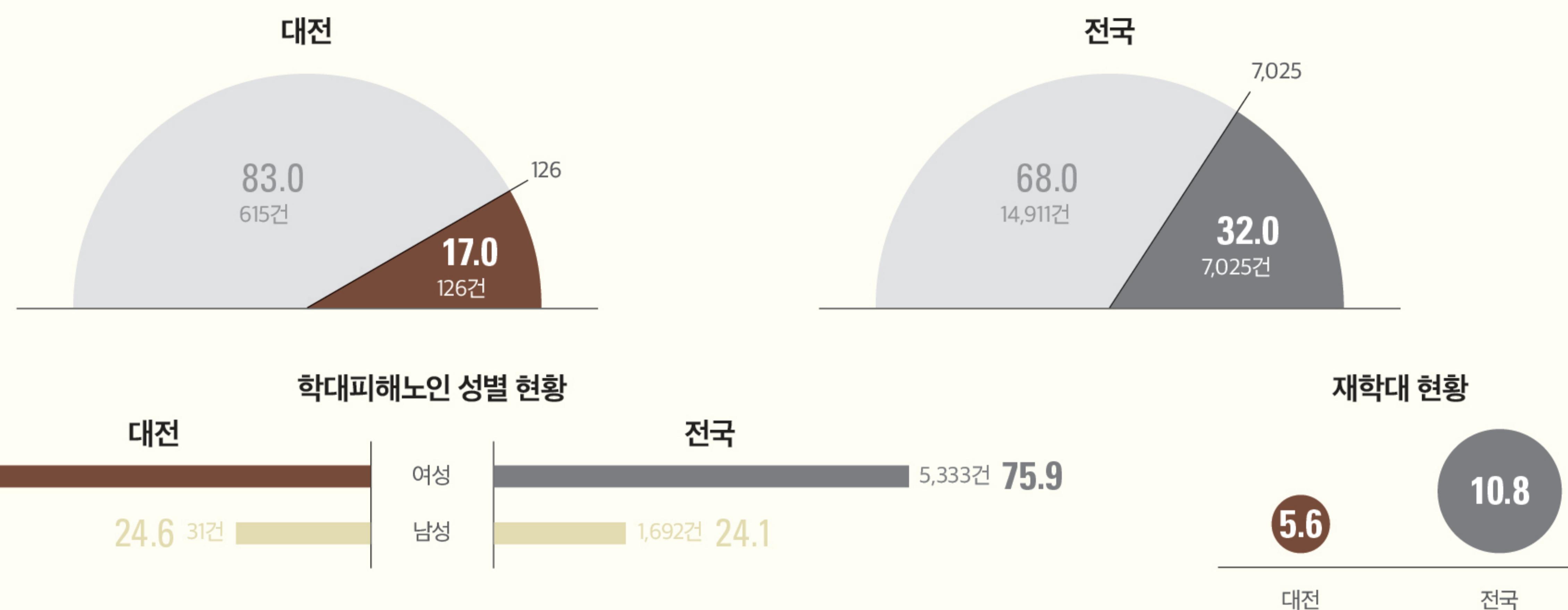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학대를 당한 대전 노인의 **75.4%는 여성**

대전에서 노인학대로 신고 된 741건 중 17.0%는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피해노인 중 여성 비율은 75.4%로 남성노인(24.6%)의 3배를 넘어섰다. 또한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학대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인 재학대 비율은 5.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은 전체 신고 건수 중 학대사례 비율은 32.0%, 학대피해 여성노인 75.9%, 남성노인 24.1%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사례별 신고접수 현황(2023)

●: 학대사례 ●: 일반사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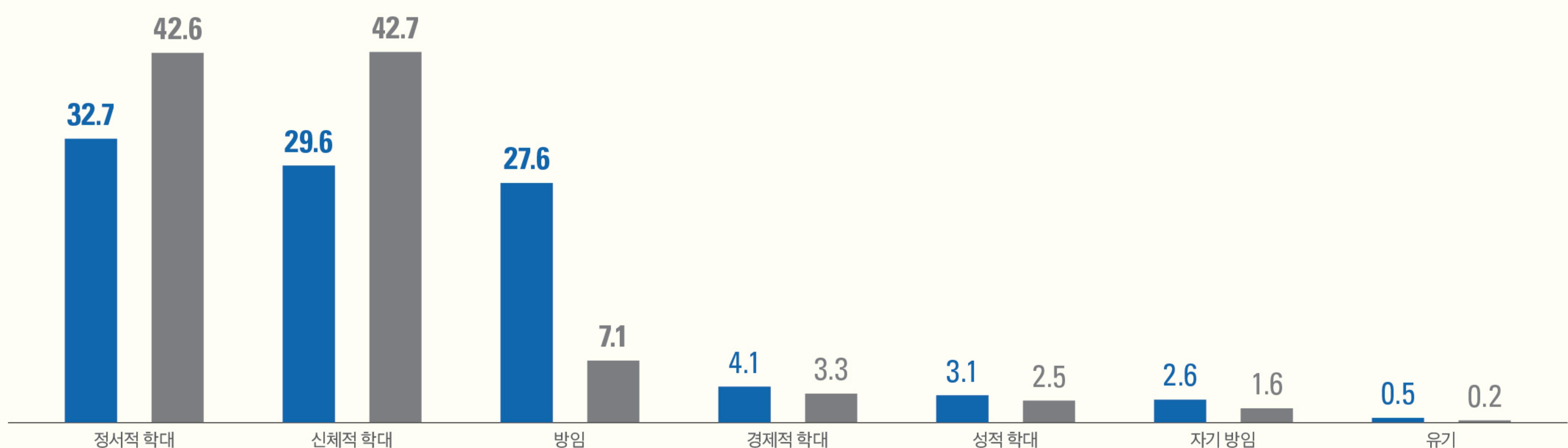
- 일반사례: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 학대사례: 노인학대가 현재 발생해 즉시 격리 요구
- 재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사례
- 출처: 보건복지부,『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비난·모욕·위협 등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아

2023년 기준 대전의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 신체적 학대(29.6%), 방임(27.6%), 경제적 학대(4.1%), 성적 학대(3.1%), 자기방임(2.6%), 유기(0.5%) 순이다. 전국은 신체적 학대가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서적 학대(42.6%)가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2023)

■: 대전 ■: 전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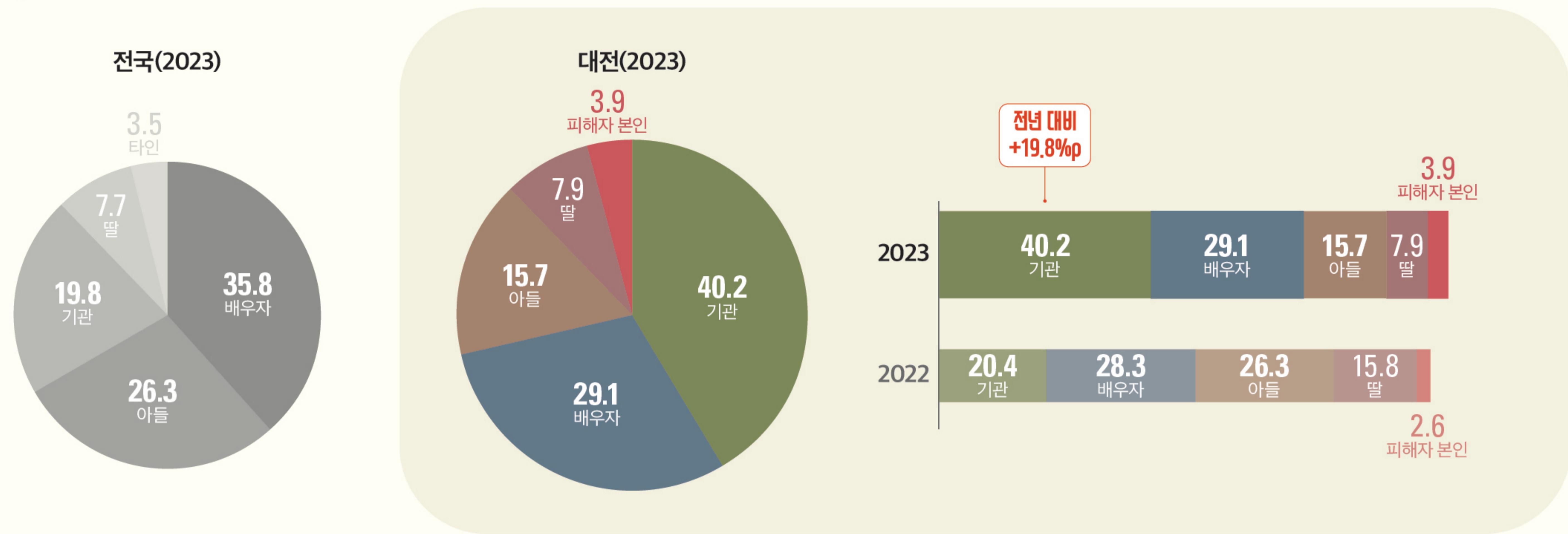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중복)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에는 차이가 있음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출처: 보건복지부,『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대전은 시설, 전국은 배우자

전국의 노인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학대행위자 가운데 배우자가 가장 많은 35.8%를 차지했다. 이어 아들(26.3%), 노인 입소시설 등 기관(19.8%), 딸(7.7%), 타인(3.5%) 등 순이다. 반면, 대전의 경우 주된 학대 행위자는 기관이 40.2%로 가장 많고, 배우자(29.1%), 아들(15.7%), 딸(7.9%), 피해자 본인(3.9%), 손자녀(3.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19.8%p 증가했다.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상위 5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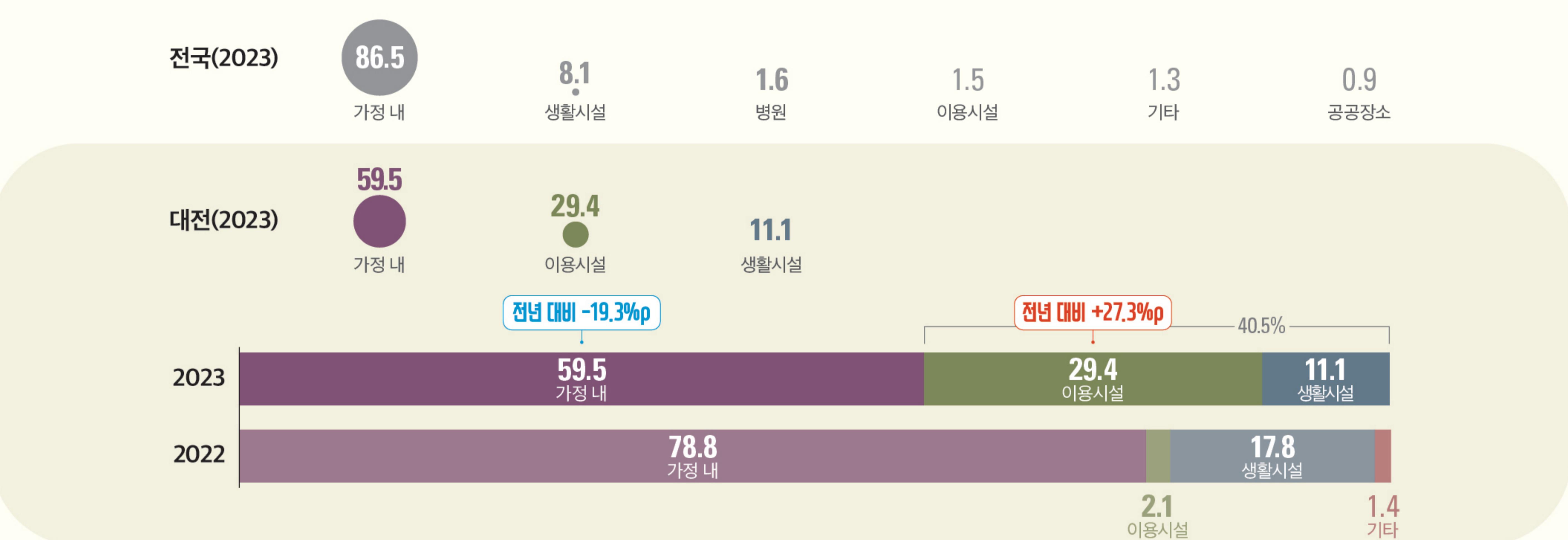
- 학대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노인 수와 학대행위자는 차이가 있음
- 비율이 높은 순으로 나열했으며, 상위 5위까지만 제시함
- 출처: 보건복지부,『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이용시설 내 학대, 전년 대비 27.3%p↑

2023년 대전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9.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용시설 29.4%, 생활시설 11.1%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가정 내는 19.3%p 감소했고, 이용시설은 27.3%p 증가했다. 전국은 가정 내 비율(86.5%)이 다른 장소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학대 발생장소

단위: %



- 가정 내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 생활시설 학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이용시설 학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같은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병원 학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공공장소 학대: 사립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 출처: 보건복지부,『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각년도

